

행 정 자 치 부

훈계·주의 요구

제 목 시공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창원시 마산합포구

관 련 자 창원시 마산합포구 ○○○과(전 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 ○○○은 2013. 7. 12.부터 2014. 7. 27 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○○○과에서 건축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다.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에 따르면 연면적이 495㎡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인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한 숙박시설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고

다만, 농업용·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.

그런데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○○○과에서는 아래 [표]와 같이 건축주가 신청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무자격자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는데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에 의거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보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착공신고를 수리하여 시공 및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[표] 시공자격이 없는 자에게 착공신고 수리 현황

구 분	위 치	건축주 /시공사	용 도	연면적(m ²)	건 축 허가일	착 공 신고일	동수/ 층수	비고
신 축	마산합포구 ○○면 ○○리 000외 0필지	○○○	숙박시설	1,407.84	'14.3.21	'14.5.28	2동/ 4층	

조치할 사항 **창원시장은**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건축허가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라 건설업자 시공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착공신고서를 수리하고, 위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